

# 평창군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에대한조례등개정요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3.29. 평창군수(건설과장)
- 나. 회부일자 : 2001. 4. 17
- 다. 상정일자 : 제84회 평창군의회(임시회)제1차 조례특위(2001.4.17)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과 : 건설과장 박현창)

### 가.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 골자

- “음식점·숙박시설”을 “위락·숙박시설등”으로 변경
-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상수원 취수지점 상류제한완화
- 하천·도로의 거리제한
- 천연기념물·지역유형 문화재·지방기념물·문화자료, 기타 문화유산 제한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조례임

○ 관계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 안의 행위제한)

제4호(준농림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등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위락·숙박시설)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 에따라음식점 · 숙박 시설을 위락·숙박시설로,

허가사항중 지방하천·준용하천의 양안 40M를 숙박은 40M· 위락시설은 30M로, 상수원지역의 상류 유하거리를 4Km에서 1Km 양안 100M로, 고속국도·철도 경계선 50M, 국도·지방도·군도 경계선 30M를 정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하였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 200M와 영농을 목적으로 이용한 지역으로서 보전가치가 적거나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각각 삭제한 반면 국가·지방문화재, 명승지, 사적지 주변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에 천연기념물(본군은 백룡동굴이 해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입법예고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기타 법령의 형식·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1부